

대구행복기숙사 2023년 1학기 신규 입사자 모집 공고

대구행복기숙사는 「국정과제 90」과 연계한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 여건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일정 및 선발인원

■ 입사생 선발일정



■ 선발인원

단위 : 명

인 실		
성별	1인실 (장애인실)	2인실
남 자	0	000
여 자	0	000
합 계	0	000

2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 신청대상

- 2023년 1학기 기준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 대학생(대학원생)
- 2023년 1학기 복학생은 휴학 기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미고려)
- 아래 표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 및 선발 불가

구분	세부 사항
학적 관련	2023년 1학기(3월) 기준 1년 초과 휴학생, 졸업생은 지원 불가(대학원 동일)* - 휴학생·졸업생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별도 자격여부 확인 예정
병리 관련	법정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
생활 관련	기존 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1년 이내)

*단, 공실 발생 시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2년 이내 졸업생까지 신청범위 확대 가능

■ 선발기준(사회배려자)

선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1~2구간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 가구 자녀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8순위	시외지역 주소지 학생
9순위	1~8순위 미해당자(대구광역시 주소지 학생)

■ 선발기준(거리)

지표	평가 배점	평가 기준
원 거 리	100점	기숙사에서 300KM 초과
	90점	기숙사에서 300KM 이하
	80점	기숙사에서 250KM 이하
	70점	기숙사에서 200KM 이하
	60점	기숙사에서 150KM 이하
	50점	기숙사에서 100KM 이하
	40점	기숙사에서 50KM 이하
	30점	기숙사에서 40KM 이하
	20점	기숙사에서 30KM 이하
	10점	기숙사에서 20KM 이하

■ 선발 순위 결정방법

우선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1번	사회적배려자	사회적배려자 우선선발(동점시 대구시 우선)
2번	거리	지역별 직선거리점수
3번	출신지	기숙사에서 본가 주소까지 거리
4번	생년월일	생년월일 기준 연소자 우선

3 비용안내

■ 기숙사비

호 실	입사 유형	분납유형	보증금(원)	기숙사비(원)	
				1차분	2차분
1인실 (장애인실)	6개월 (2.25~8.20)	일시납	100,000	1,408,000	-
		분납	100,000	704,000	704,000
2인실	6개월 (2.25~8.20)	일시납	100,000	1,408,000	-
		분납	100,000	704,000	704,000

※1일 기숙사비 8,000원

■ 식비

입사 유형	식수 형태	식비(원)	비고
6개월	월 20 or 25식 A식	696,000	- 매일 자유롭게 식사 가능 - 월단위 기준표 참조해 식사 요망
	월 30 or 35식 B식	943,000	
	월 40 or 45식 C식	1,166,000	

※A식 1끼 : 4,800원, B식 1끼 : 4,600원 C식 1끼 : 4,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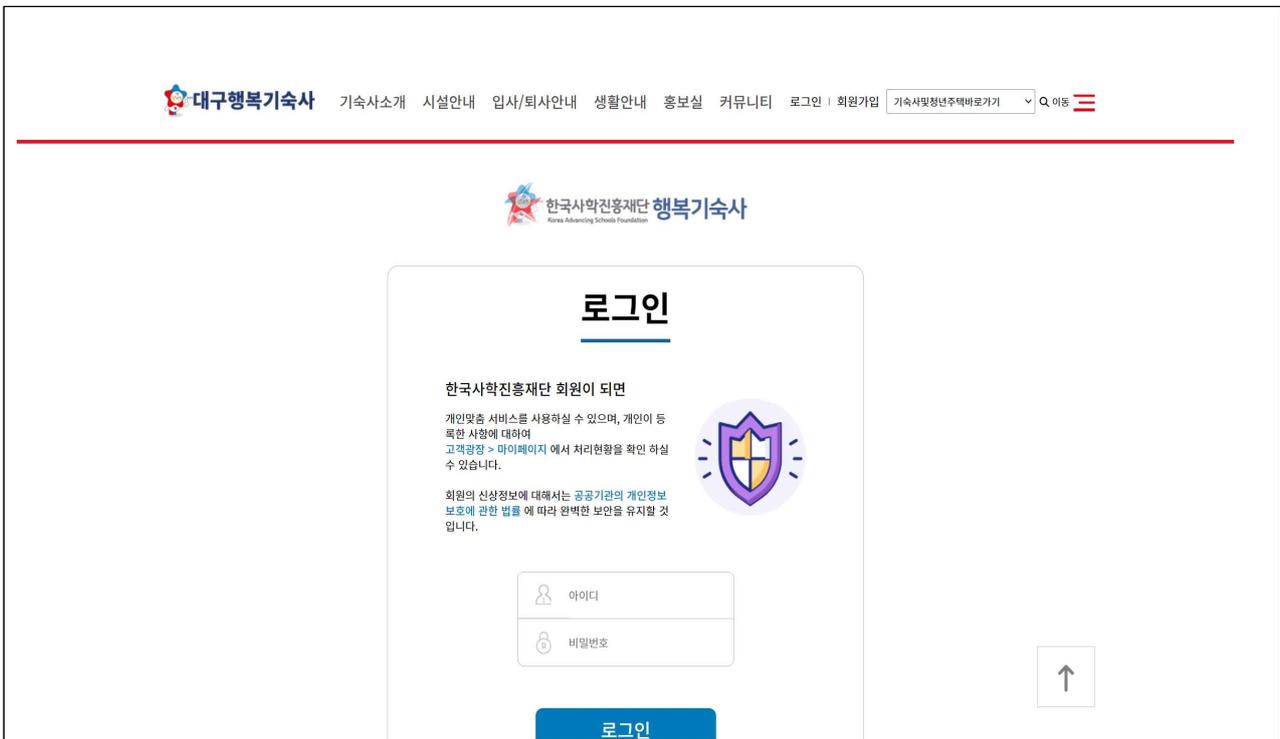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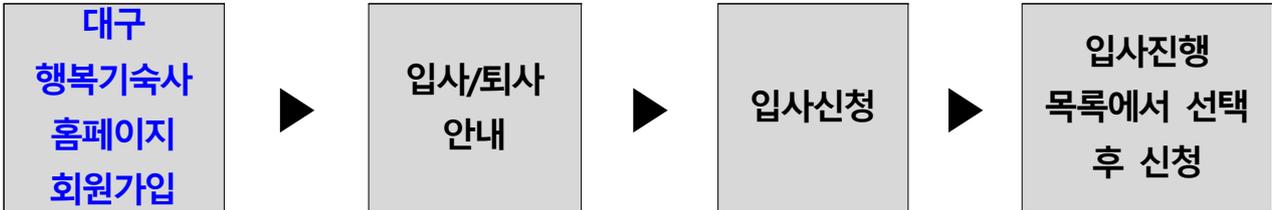
■ 식수 월단위 기준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6개월	A식	25	25	25	25	25	20	145
	B식	35	35	35	35	35	30	205
	C식	45	45	45	45	45	40	265

※매월 1일 기준 식수는 초기화

4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안내

■ 신청방법



로그인 화면(회원가입필수)



입사신청 화면(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입사신청)

※ 별도 파일 참조

■ 기숙사 신청 후 사회배려자 서류 제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배려대상자로 신청할 학생은 입사신청시 동시 제출 -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부터(2023. 02. 01.) 인정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님과 별개로 등본이 구성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등본 제출) ② 사회배려 대상자 서류(아래 표 참조)
--

■ 사회배려대상자 서류 발급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택1)	발급처
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 복지시설수용자 증명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다문화가정 자녀		- 귀화자: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소득 증빙 서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 사실증명서(무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가족구성원 1인당 1개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세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통지 서발급)	한국장학재단

■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기준 안내

-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안내

구 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30% ~ 7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본인을 뜻함 - 세대구성원 모두 각각의 소득서류 제출 필요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합산한 금액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직장근로자) -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 2021년 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구성원이 소득 관련 서류 발급 ②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 12 ③ 가족 구성 인원수에 따른 기준표 확인(아래)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단위 : 원</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2인 가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3인 가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4인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3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3,3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925,570</td> <td style="text-align: center;">2,160,24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5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422,185</td> <td style="text-align: center;">3,209,283</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4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7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391,059</td> <td style="text-align: center;">4,492,996</td> <td style="text-align: center;">5,040,566</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1인 또는 5인 가구 이상은 별도 확인 필요</p>	소득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 30% 이하	1,453,311	1,925,570	2,160,243	소득 50% 이하	2,422,185	3,209,283	3,600,405	소득 70% 이하	3,391,059	4,492,996	5,040,566
소득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 30% 이하	1,453,311	1,925,570	2,160,243														
소득 50% 이하	2,422,185	3,209,283	3,600,405														
소득 70% 이하	3,391,059	4,492,996	5,040,566														

5 기타 유의사항

■ 기숙사 합격 후 제출 서류(미제출시 입사 불가)

구 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기숙사 입사용 결핵진단서(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학적관련 증빙서류(재학, 휴학) - 별도 공지 후 제출 예정

■ 유의사항

- 입사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 입사를 불허함
- 입사 이후 호실 변경 신청은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정규 입사 기간 사이(8월말, 2월말)에는 식당 휴무 기간
- 입사생 차량 등록 불가
- 문의사항 053-770-2566, 2637으로 연락

2023. 02. 01.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행복기숙사